

[사 건 명] 행심 2017-1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I. 사건개요

- 가. 청구인은 2017. 1. 13. 인천광역시 ◎◎ ▽▽▽▽ ■■■BL ◀LT 소재 건물 3층 전부(면적 ■■■■.91㎡) 이하 ‘이 사건 신청 장소’ 라 한다)에 노래 연습장 시설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나. 2017. 2. 1.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직접 현지 방문을 하고 주변 환경 확인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함에 따라 “금지” 로 심의·의결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근거로 “금지” 결정된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청구인은 2017. 2. 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17. 3. 21.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노래연습장은 당구장 보다 유해도가 낮은 업종임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건물의 바로 옆 건물(㉠블럭 1,2롯데)에 당구장 설치를 허용한 반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서는 노래연습장 설치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합리성 및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며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 나. 판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성의 정도가 그다지 큰 시설이라 볼 수 없고, 노래연습장의 주된 영업시간은 야간인 반면 초등학교는 주간에 등·하교 및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초등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다. 이 사건 신청지는 대단지 아파트 주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학부모의 관리 지배권이 항상 미치는 장소이며, 주 고객층은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가족단위의 주민으로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건전한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노래연습장보다 당구장이 더 유해한 업소임에도 신청지 바로 옆 건물의 당구장 설치를 허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4항에서 노래연습장은 “유해

업소” 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1항에 의거 당구장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한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유해업소”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인천 ○○○초등학교 학교장 의견서에서 “이 사건 대상지는 ■■■■■2단지 및 ■■■■■2단지아파트와 인접한 위치로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유해업소가 늘어난다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학습과 생활지도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이 청소년에게 유해성의 정도가 낮다고 하나, 노래연습장은 폐쇄적으로 쉽게 흡연 등 나쁜 습관에 노출 될 수 있으며, 영상반주 장치에서 재생되는 영상의 내용이 선정적인 점, 출입자 중 상당수가 취객 또는 이성동반자인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이 사건 대상지 주변은 현재 개발구역으로 빈공간 대지도 분포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건축예정지역으로 “유해업소” 타운화 형성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대상지 좌우 건물에 대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통해 ◀◀ ◀◀◀ 산149에 2016. 9. 20.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금지”, ◀◀ ◀◀◀◀ 88블럭 1,2롯데 2016. 3. 10. 노래연습장 “금지”, 2016. 7. 27. 노래연습장 “금지”, 이 사건 대상지 ◀◀ ◀◀◀◀ 88블럭 3롯데 2017. 2. 1.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금지”, ◀◀ ◀◀◀◀ 88블럭 4롯데 2015. 4. 7.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금지” 한 바 있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1. 관계법령

- 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24조
-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의 이 사건 대상지는 인천○○초등학교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158m, 출입문으로부터 198m로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 2) 이 사건 인천○○초등학교장은 이 사건 대상지는 ■■■■■2단지 및 ■■■■■2단지아파트와 인접한 위치로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유해업소가 늘어난다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학습과 생활지도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 3) 이 사건 신청 대상지 좌우에 위치한 ◀◀ ◀◀◀ 산149에 2016. 9. 20.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금지”, ◀◀ ◀◀◀◀ 88블럭 1,2롯데 2016. 3. 10. 노래연습장 “금지”, 2016. 7. 27. 노래연습장 “금지”, 이 사건 대상지 ◀◀ ◀◀◀◀ 88블럭 3롯데 2017. 2. 1.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금지”, ◀◀ ◀◀◀◀ 88블럭 4롯데 2015. 4. 7.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금지” 한 바 있다.

- 4)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2017. 2. 1. 직접 현지 방문을 하고, 주변 환경 확인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함에 따라 “금지”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청구인은 노래연습장보다 당구장이 더 유해한 업소임에도 이 사건 대상지 바로 옆 건물에 대하여는 당구장 설치를 허용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대상지 건물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4호에서 노래연습장은 “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9조 제21호에서 당구장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유해업소”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이 청소년에게 유해성의 정도가 낮다고 하나, 노래연습장은 폐쇄적으로 쉽게 흡연 등 나쁜 습관에 노출 될 수 있으며, 영상반주 장치에서 재생되는 영상의 내용이 선정적인 점, 출입자 중 상당수가 취객 또는 이성동반자인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셋째,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의 주된 영업시간은 야간인 반면 초등학교는 주간에 등·하교와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초등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상지는 ■■■■■2단지 및 ■■■■■2단지아파트와 인접한 위치로 위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유해업소가 늘어난다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학습과 생활지도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욱이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반드시 야간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소자들 역시 노래연습장 출입 허용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유흥문화를 따라하고 흥내낼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넷째,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지 건물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이 침해가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상지 좌우 건물에 대하여 이미 2016년 노래연습장 및 PC방 해제신청에 대하여 금지결정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지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기일이 지났음에도 계약금만을 납부하였다고 하고, 더욱이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산업개발이며(■■■■■산업개발은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였고, 이 사건 대상지 건물 3층의 경우에는 학원이나 의원, 부동산중개사무실 용도로 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을제 2호증), ■■■■■산업개발은 이미 이 사건 대상지가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임을 알았으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인 청구인에게도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여짐), 더욱이 청구인은 이전에 상당기간 노래연습장을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바, 청구인 역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대

상지가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노래연습장이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임에서 금지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규정들의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 형량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